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0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박용갑 · 이광희
이상식 · 최혁진 · 김영배
안태준 · 염태영 · 손명수
김우영 · 문진석 · 송재봉
강준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은 정부가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·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.1%에서 2024년 6.5%로 크게 떨어진바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 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6항 신설).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</u> <u>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</u> <u>우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</u> <u>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</u> <u>해·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</u> <u>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.</u>